

섬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2017. 4



국 토 교 통 부
원주시방국토관리청

섬강 상류 권역 하천 기본 계획 (변경)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1. 주민의견 수렴개요

- 본 계획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환경상의 영향에 대해 지역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의거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음

가. 계획수립 행정기관 및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 협의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 관할 도 : 강원도
- 관할 시·군 : 원주시, 횡성군, 홍천군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

- 중앙일간지 : 전국매일신문
- 지방일간지 : 강원도민일보
- 정보통신망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라. 주요 공고·공람 내용

- 공람기간 및 장소

구 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2016.8.22. ~ 2016.9.21. (24일간, 공휴일 제외)
공람 장소	원주시	원주시청(건설방재과)
	횡성군	횡성군청(안전건설과)
	홍천군	홍천군청(건설방재과)
	정보통신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2016. 9. 28 까지)
- 의견제출 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마. 주민설명회

- 주민설명회 개최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원주시	2016.8.30. 10:00	호저면사무소	
횡성군	2016.8.30. 15:00	갑천면사무소	
홍천군	2016.8.31. 15:00	좌운1리 마을회관	

바. 주민설명회 공고

2016년 8월 19일 금요일 제4809호 www.jeonmae.co.kr 전국매일신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41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섬강 상류 및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원 주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계 획 명 : 섬강 상·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 위 치 : (상류권역)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홍천군 일원
(하류권역)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일원
- 시 행 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기간 : 2011. 8.31 ~ 2017. 6.19
- 사업내용 : (상류권역)국가하천 1개소 및 지방하천 13개소(섬강, 계천, 구사천, 유동천, 대관대천, 급계천, 장봉천, 초원천, 전천, 대미원천, 하수남천, 성운천, 장양천, 옥산천)(L=195.2km) 하천기본계획(변경)
(하류권역)국가하천 1개소 및 지방하천 17개소(섬강, 원주천, 신촌천, 화천, 홍양천, 일리천, 이리천, 삼산천, 석곡천, 매월천, 단석천, 계정천, 서곡천, 대이천, 대안천, 공촌천, 원심천, 부평천)(L=207.3km) 하천기본계획(변경)

2. 공람 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6. 8.22 ~ 2016. 9.21
- 공람장소 : (상·하류 권역공통)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원주시 건설방재과, 횡성군 안전건설과 (상류권역)홍천군 건설방재과 (하류권역)여주시 안전총괄과, 양평군 안전총괄과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섬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사·군	일 시	장 소	대 상
원주시	2016. 8.30. 10:00	원주시 호저면사무소 회의실	평가대상 지역 주민
횡성군	2016. 8.30. 15:00	횡성군 갑천면사무소 회의실	
홍천군	2016. 8.31. 15:00	홍천군 동면 좌운1리 마을회관	

- 섬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사·군	일 시	장 소	대 상
원주시	2016. 9. 1 10:00	원주시 문막읍 문막복지회관	평가대상 지역주민
횡성군	2016. 9. 1 15:00	횡성군 서원면사무소 대회의실	
여주시	2016. 9. 2 10:00	여주시 강천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양평군	2016. 9. 5 14:00	양평군 양동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시기 : 2016. 8.22 ~ 2016. 9.28(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5. 기타 자세한 내용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033-749-8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9일 금요일

강원도민일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41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섬강 상류 및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원 주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계 획 명 : 섬강 상·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 위 치 : (상류권역)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홍천군 일원
(하류권역)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일원
- 시 행 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기간 : 2011. 08. 31 ~ 2017. 06. 19
- 사업내용 : (상류권역)국가하천 1개소 및 지방하천 13개소(섬강, 계천, 구사천, 유동천, 대관대천, 급계천, 장봉천, 초원천, 전천, 대미원천, 하수남천, 성운천, 장양천, 옥산천)(L=195.2km) 하천기본계획(변경)
(하류권역)국가하천 1개소 및 지방하천 17개소(섬강, 원주천, 신촌천, 화천, 홍양천, 일리천, 이리천, 삼산천, 석곡천, 매월천, 단석천, 계정천, 서곡천, 대이천, 대안천, 공촌천, 원심천, 부평천)(L=207.3km) 하천기본계획(변경)

2. 공람 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6. 8. 22 ~ 2016. 9. 21
- 공람장소 : (상·하류 권역공통)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원주시 건설방재과, 횡성군 안전건설과 (상류권역)홍천군 건설방재과 (하류권역)여주시 안전총괄과, 양평군 안전총괄과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섬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사·군	일 시	장 소	대 상
원주시	2016. 8.30. 10:00	원주시 호저면사무소 회의실	평가대상 지역 주민
횡성군	2016. 8.30. 15:00	횡성군 갑천면사무소 회의실	
홍천군	2016. 8.31. 15:00	홍천군 동면 좌운1리 마을회관	

- 섬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사·군	일 시	장 소	대 상
원주시	2016. 9. 1 10:00	원주시 문막읍 문막복지회관	평가대상 지역주민
횡성군	2016. 9. 1 15:00	횡성군 서원면사무소 대회의실	
여주시	2016. 9. 2 10:00	여주시 강천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양평군	2016. 9. 5 14:00	양평군 양동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4.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시기 : 2016. 8. 22 ~ 2016. 9. 28(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거 서면 제출

5. 기타 자세한 내용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033-749-82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매일신문

강원도민일보

사. 주민설명회 사진

원주시 호저면사무소



횡성군 갑천면사무소



홍천군 좌운1리 마을회관



아.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illegible]

2.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초안검토의견 및 반영여부

구 분	의 건	조치결과	비고
원주 지방 환경 청	1. 총괄		
	○본 계획은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홍천군 일원의 국가 및 지방하천 14개소, 195.20km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의 이·치수 및 환경적 측면 등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하천의 이·치수 및 환경적 측면 등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항목별로 수립·제시하였음	본안 반영 p.1 ~953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구간별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도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필요성을 검토하되, 제내지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시설물 여부, 하천 경관 등을 고려한 하천공사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수리·수문면에 해당 구간별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도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필요성을 검토하여 자연성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함	본안 반영 p.636 ~851
	○하천공간의 관리계획 수립 시 구간별 생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하천 지구별 계획을 세우되, 친수지구는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하여야 함	○하천의 생물다양성 현황, 생태환경, 수질 및 수리적 특성, 현재 하천공간의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별 공간관리(보전·복원·친수)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도면과 표로 제시하였음	본안 반영 p.935 ~952
	2. 세부 협의내용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동 사업계획과 상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여부, 유입·함류되는 하천의 여건, 과거 호우 및 수해로 인한 재해 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의 자연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7장 계획의 적정성” 편에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제시하였으며, 수리·수문면에 호우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연성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함	본안 반영 p.636 ~851
	나. 대안의 선정		
	○제방 및 호안계획 수립 시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 하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식생활착이 가능한 호안공법 등을 필요한 최소지역에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파라펫트를 적용할 계획임	본안 반영 p.49, 18 ~24
	○동 사업은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추진전략과 방법,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제3장 개발기본계획 대안”편에 공법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수립·제시하였음	본안 반영 p.43 ~49
	다.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본 계획의 내용을 구간별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특히 생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원형보전 하는 등 하천이 본래 지니는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계획하천의 내용을 하천별, 구간별로 상세히 제시하였으며, 사업계획을 최소화 하여 생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으며, 원식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호안공법을 계획하였음.	본안 반영 p.425 ~478 p.935 ~952

구분	의 건	조치결과	비고
원주 지방 환경 청	○각 하천의 동·식물상 조사결과 발견된 법정보호종에 대하여는 서식지 및 생물종 특성에 적합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 - 수달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사업계획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 대체서식지 조성 등 저감방안을 면밀히 수립하되, 해당 지역은 사업계획에서 제척하는 것을 우선 고려 - 대부분의 하천에서 생태계교란생물(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미국쑥부쟁이 등)의 서식이 확인된 바, 제거 등 적정 관리 방안을 강구 수립·하여야 함. - 사업구간 내 육수동물 등 주요종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주요 종의 번식기 및 산란기에는 공사를 지양하고, 구간별, 시기별로 공사 진행을 달리하는 단계적인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방향 제시	○하천별 법정보호종 현황 및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각 분류군별 적절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였음. - 수달에 대한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시설계시 서식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제척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생태계교란야생생물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였음. - 사업구간 내 육수동물의 생활사를 고려하여 번식기 및 산란기에는 공사를 지양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하천 구간별·시기별로 공사를 진행하여 생태적인 배려를 통해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본안 반영 p.412~478 p.476 p.467~471 p.472~478
	○호안은 사면안정성 등 홍수방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경사로 계획하여 야생동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고, 생태계 서식 공간 조성 및 수변경관 창출을 위하여 친환경 생태호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호안공법은 홍수방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경사로 계획하였으며, 야생동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식생유입이 가능한 호안공법을 적용하여 생태호안으로 조성토록 계획하였음.	본안 반영 p.463~467
	○횡단구조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종적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어도는 주요 어종에 대한 서식특성 및 유량, 유량변화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어도 형식을 선정·제시하여야 함. - 현재 어도가 설치된 구조물은 어류의 이동 유무 등 어도 기능 유무 확인을 통해 재가설 혹은 존치 여부를 결정 - 어도 형식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어류의 상·하류간 자연스러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연친화적인 형식(생태어도 보 등)을 선정·제시	○하천의 횡단구조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어도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의 특성, 유량, 유량변화 등을 검토하여 어도 형식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하천별 실시설계시 어도를 선정하겠음. - 하천별 실시설계시 현재 어도가 설치된 구조물은 기능 유무 확인을 통해 재가설 혹은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음. - 어도 형식별 장·단점을 분석하였으며, 하천별 실시설계시 자연친화적인 어도 형식을 선정하겠음.	본안 반영 p.473~475
	○본 사업계획의 내용을 하천별, 구역별로 상세하게 제시하고, 특히 보전이 필요한 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내 또는 인근의 하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도면화하여 제시하여야 함. - 하천 식생의 공간적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천 생태계의 경우 최대한 출현 식생을 원형 그대로 보전할 수 있는 계획 수립	○계획하천의 사업계획의 내용을 하천별, 구역별로 상세히 제시하였으며,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상에 도면화하여 제시하였음. - 제방 등의 보축계획은 최소화하여 하천식생을 최대한 보존토록 하였으며, 훼손된 구간은 원식생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호안공법 적용하였음.	본안 반영 p.425~478

구분	의 건	조치결과	비고
원주지방환경청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하천의 자연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의 기존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 하도정비 및 하상진입 등은 가급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여 하상구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비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 하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식생활착이 가능한 호안공법 등을 시설이 필요한 최소지역에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부 하도정비는 최소화하여 계획하였음	본안 반영 p.18 ~38
	○축제 및 보축은 통수능력 확보에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계획하되, 홍수 피해 또는 향후 예상되는 지수적 문제점 등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분석·제시하여야 함. - 축제 및 보축 등 호안정비 내용은 도면을 이용하여 정비방법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표시(축점 제시) - 호안형식은 식생호안블럭, 보축 및 환경파라펄트를 적용함을 계획하였으나, 획일적인 하천정비는 지양하고 하천별 경관 특성 및 자연성 회복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제시 - 주변 생태계 연결성 저해 및 경관상 영향 발생 가능성이 큰 파라펄트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재해예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설치 필요 시 제방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형동물의 이동을 위한 횡적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제시 - 무재부 구간은 하천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 검토를 통해 호안정비를 가급적 지양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 하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식생활착이 가능한 호안공법 등을 시설이 필요한 최소지역에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공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부구간에 대해서만 파라펄트를 적용 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시 소형동물의 이동을 위한 횡적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적용도록 할 계획임 - 부록편에 축제 및 보축 등 호안정비 내용은 도면을 이용하여 제시함	본안 반영 p.18 ~38, 부록편
	○계획 하폭의 규모 결정 시 과거 홍수 이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하여야 함	○최근의 홍수 및 수해현황을 검토하여 홍수량 및 홍수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하천시설물을 계획하였음	본안 반영 p.643 ~851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축제 및 보축 시 직선화, 일률적인 호안공법, 과도한 경사 적용 등을 지양하고, 교량 등 각종 시설물은 주변 경관유형별 분석 및 영향예측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계획·제시하여야 함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 하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식생활착이 가능한 호안공법 등을 필요한 최소지역에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경관심의대상 하천의 경우 경관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제시하여 결과를 제시함	본안 반영 p.538 ~548
	4) 수환경의 보전		
	○계획 홍수량이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홍수위, 하폭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계획하천 유역내 강우분석을 통하여 홍수량을 산정하고 기수립 기본계획과 비교·검토하여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	본안 반영 p.643 ~851
	○교량, 보 등 횡단구조물은 현황 및 설치(존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능상실 및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철거하되, 이·치수를 위해 해당 시설을 유지할 경우 생태계의 종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등 수생태계 건정성 확보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하천시설물의 능력검토를 통하여 하천시설물 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의 수질개선 및 공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음	본안 반영 p.818 ~851

구분	의견	조치결과	비고
원주 지방 환경 청	○하천정비 시 토사유출 및 탁수발생 등으로 하천생태계의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보전 지역 상류에 위치하는 하천(섬강, 계천 등)은 취수 등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 수립	○계획하천의 공사시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보전 및 복원 지구로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임	본안 반영 p.626 ~635
	○하천 유역 내 점·비점오염 발생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오염원 관리대책 수립하는 등 하천의 보전대책을 적극 수립하여야 함. - 비점오염물질 유입 수역(농경지, 주거지역, 고수부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점오염원 저감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제시	○계획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관리계획 및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음	본안 반영 p.630 ~635
	라. 생활환경의 안전성		
	1)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및 해당 지자체 지역 환경기준 등과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음·진동 영향 예측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된 지역은 가설방음판넬 등 적정 저감시설 설치 계획 등 저감방안을 수립·제시	○환경기준(지역기준 포함)을 목표로 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설방음판넬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	본안 반영 p.894 ~896
	2)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공사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건설, 생활, 지정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재활용 및 위탁처리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공사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건설, 생활, 지정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재활용 및 위탁처리 등이 적정하게 처리 할 것임	본안 반영 p.906 ~909
	마.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친환경적 토지이용		
	○대상하천의 생물다양성 현황, 생태환경, 수질 및 수리적 특성, 현재 하천공간의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별 공간관리(보전·복원·친수) 계획을 수립하되,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설정·제시(좌·우안 구분) 하여야 함	○하천의 생물다양성 현황, 생태환경, 수질 및 수리적 특성, 현재 하천공간의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별 공간관리(보전·복원·친수)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도면과 표로 제시하였음	본안 반영 p.935 ~952
	○지구별(보전·복원·친수) 지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구별 지정(안)을 도면으로 제시 - 생태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등은 보전지구로 우선 지정 -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지역의 복원이 필요한 구간은 복원지구로 지정 -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친수지역으로 계획하되, 하천의 자연성,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지정 ※ 하천의 지구별 구분도에 지역개황, 멸종위기종 출현구역 등을 함께 포함하여 제시	○하천의 생물다양성 현황, 생태환경, 수질 및 수리적 특성, 현재 하천공간의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별 공간관리(보전·복원·친수)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도면과 표로 제시하였음 ※ 하천별 법정보호종 현황 및 출현지점을 제시하였음.	본안 반영 p.935 ~952, 392 ~400

구분	의 건	조치결과	비고
원주 지방 환경 청	4. 기타		
	○우리청의 검토의견, 타 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요약·제시하여야 함. - 본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거나, 타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결과 등에 따라 본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을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대안 등을 제시	○환경청 및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내용 및 반영 여부를 “제6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및 주면의견 수렴” 편에 요약·제시하였음	본안 반영 p.107 ~114
	○「환경영향평가등의 자연생태조사 기초자료 작성에 관한 지침(환경부, '13.3.)」에 의거 조사 분야 모두에 대하여 지침에서 규정한 현장 조사표(수기로 작성한 조사표 사본)를 제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등의 자연생태조사 기초자료 작성에 관한 지침(환경부, '13.3.)」에 의거 수기로 작성한 조사표 사본을 부록편에 제시하였음	본안 반영 부록편
	○동 사업과 관련된 근거(관련법 및 행정계획 등)는 세부적인 내용을 명기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함	○관련근거는 해당표 하단등에 제시하였으며, 관련 용어 및 계약서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편에 제시함	본안 반영 p.1 ~953, 부록편
	○대상지역이 광역적이고 개별 소하천에 대한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작성·제시하여야 함. - 광역적인 위치도 및 현황도의 경우 자료의 판독이 가능한 해상도, 축척, 색상으로 작성·제시	○세부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작성·제시하여 항목별 및 부록편에 제시하였음	본안 반영 부록편
	○평가서 작성 등의 참여 기술인력 현황(하도급 포함)은 실제 참여한 기술인력과 평가항목별 및 참여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 작성 및 검토, 문헌 조사 및 현지 조사 참여 등 세부적으로 작성	○평가서 작성 등의 참여 기술인력 현황(하도급 포함)은 실제 참여한 기술인력과 평가항목별 및 참여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부록편에 제시함	본안 반영 부록편

구분	의 건	조치결과	비고
강원도	I. 총괄의견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하고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기상변화 등으로 인한 하천기본계획의 재정비성이 대두되어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조사·분석하여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으로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구조물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하천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환경목표가 설정되어야 함	○하천 기본계획에 친환경적인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실시설계시 구체적으로 반영토록 할 계획임. 또한, 각 항목별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환경목표를 제시하였음	본안 반영 p.17 ~38, 630 ~635
	○성강 하류권역과 연계된 점을 감안하여 상류, 하류권역의 통일성 있는 자료 검증 및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금회 본안시 상류, 하류권역의 통일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음	본안 p.656 ~851
	○본안 작성시 아래 검토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함	○아래 검토의견을 충분히 본안에 반영하였음	p.1 ~953
	II. 항목별 검토의견		
	1.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본 계획이 추구하는 환경목표를 제시하기 바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7장 계획의 적정성” 편에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의 부합성 여부를 제시함	본안 p.127 ~136
	○관련 시·군 자연환경, 환경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P107~112)	○강원도지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현재 미시행주이며,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공사시 준수토록 할 계획임. 또한 하천공간관리계획은 보전 및 복원을 우선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본안 반영 p.630 ~635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인접하는 하천의 구조물, 제방·호안 계획 등을 별도 제시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 필요(P401~408)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인접하는 하천의 구조물, 제방·호안, 보, 교량 등을 제시하였으며,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였음.	본안 반영 p.404 ~447
	○법정보호종(담비, 수달, 삿, 하늘다람쥐, 원앙, 참매, 뽕배새매, 황조롱이, 흰꼬리수리, 흰목물떼새, 한강납줄개, 묵납자루, 돌상어 등)이 계획하천 전체에 걸쳐 고루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개별 하천 실시계획 수립시 대부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후 사업이 추진되므로 서식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이 수반되지 않음. 개별 하천 시행계획 수립시 포유류, 조류의 먹이원이 되는 담수어류, 양서·파충류 등의 서식 환경 및 법정보호종의 모니터링을 통한 서식지가 보전될 수 있도록 본 하천기본계획에 모니터링 계획 수립 필요 (P396~408)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유발할 수 있는 동·식물상 및 서식환경에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음.	본안 반영 p.457 ~458

구분	의 건	조치결과	비고
강원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조사방법은 기존 문헌을 통한 분석으로 평가하였음. 하천 교량 손상, 제방·호안 보완이 필요한 구역은 현지조사를 통한 지형을 평가하고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수리검토를 통한 하천의 홍수위산정 후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된 구간에 대하여 해당구간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시종점 및 구간내 구조물의 성격 등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본안 반영 p.656 ~851
	○구조물의 안정성, 장기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하상변동 현황자료를 제시하고 구조물 계획시 연계하여 검증되어야 함	○하천별 하상변동 분석 및 구조물의 내용연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행하였음	본안 반영 p.755 ~851
	○어도설치는 어도가 없는 보 및 낙차공에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하천의 수리학적 특성 및 지형, 자연환경, 어류 현황을 종합 검토하고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친환경적 하천설계가 되도록 어도설치는 어도가 없는 보 및 낙차공에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본안 반영 p.822 ~829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하수남천, 대미원천이 치악산 국립공원(최고봉 1,288m)으로 1700m 이격되어 경관심의 대상이므로 구조물 계획에 의한 경관 변화 예상지점 주변 주요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시해야함(P461~476)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2개하천에 대해서는 경관시뮬레이션 예측결과를 제시하였음	본안 반영 p.538 ~548
	(수환경의 보전 ; 수질)		
	○계획하천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2020년,성강A)되는 지역이며, 구역이 넓고 주변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 부하량 등이 하천별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하천 수질 및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하천별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P486~562)	○계획하천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목표 수질을 설정하였으며,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계획하천 유역내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하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음.	본안 반영 p.630 ~635
	(수환경의 보전 ; 수리·수문)		
	○홍수 계획빈도, 홍수량, 홍수위 등이 성강 하류권과 연계하여 통일성 있게 검증되고 구조물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시 하류권과 계획빈도, 홍수량, 홍수위 등을 통일성 있게 제시하였음	본안 반영 p.656 ~817
	○하천의 수리·수문 검토에 의한 교량, 보 및 낙차공 등 구체적인 구조물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구조물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제시하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물 설치 계획도면을 첨부해야함	○하천별 구조물 현황 및 설치 계획을 표로 제시하였으며, 설치계획 도면은 평면도에 표시하였음	본안 반영 p.17 ~38, 부록편
	나.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하천별 구조물 계획(개소, 연장 등)을 총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기 바람	○하천별로 구조물계획을 표로 제시하였음	p.17 ~38
	○제방·호안 공법은 특징 및 장,단점을 구분 제시해야 하고 설치 가능한 공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제3장 대안분석” 편에 제방·호안 공법은 특징 및 장,단점을 구분 제시하고, 식생활착이 가능한 호안공법 등을 채택하였음	본안 반영 p.49
	○하천 친수지구의 주요 계획내용을 하천별 총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기 바람(P815~832)	○하천 친수지구의 주요내용을 하천공간관리계획 상세표에 제시하였음	p.935 ~952
	○보 및 낙차공은 기존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곳은 철거가 필요함. 철거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보 및 낙차공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상태가 불량하여 기능이 떨어진 곳에 대하여는 보강계획을 수립함	본안 반영 p.17 ~38

구분	의견	조치결과	비고
원주시	○호저면 대덕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한 시내 지역에서 차량 접근이 용이한 교량 설치와 저수호안을 설치하여 휴식시설 계획요망	○실시설계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징검다리 및 휴식시설을 반영할 계획임	-
횡성군	○현 하도를 중심으로 선형을 선정하되, 하천의 지형, 토지이용형태 및 주거지를 고려하여 하천공사 시행 시 민원을 최소화하는 계획수립이 필요함. 또한, 하천구역 결정·고시 후 하천구역 편입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주민에게 설명회 또는 열람을 통하여 사전에 협의가 필요	○현하도를 중심으로 자연적인 하천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토지이용형태 및 주거지를 고려한 하천공사 시행 및 실시설계시 하천구역 편입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임	본안 반영 p.17~38
	○또한, 축제나 보축등 개수계획 수립 시 하폭과 제방고를 고려하여 하상폭 축소로 유수흐름을 저해되지 않도록 계획하폭(양안)을 결정고려(하천부지 최대활용)	○하천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축제나 보축등 개수계획 수립 시 하상폭 축소로 유수흐름을 저해되지 않도록 계획하폭을 결정하였음	본안 반영 p.755~817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계획고가 제방보다 높고, 도로 계획시 교량 주변의 시설물 또는 주택등으로 종단계획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교량지점에 하폭, 하도정비 및 낙차공등으로 계획홍수위를 저감하는 계획이 필요	○교량이 횡단하는 하천 구간은 통상 홍수위에 여유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도로 및 교량의 종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음. 금회 계획시에는 교량 부분의 홍수위 저감을 위하여 퇴적토 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하도정비를 시행하였음	본안 반영 p.35
홍천군	○의견없음	-	-

■ 주민의견 제출 여부 : 주민의견 없음